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흡연의 형태 구체화 등〉

■ 최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5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최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55호) ..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흡연의 형태 구체화(안 제57조의2)	3
2.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 추가(안 제59조)	5
3. 사실조사 대상 추가(안 제60조)	13
4. 기장의 의무 보고 대상 추가(안 제62조)	15
5. 항공기 내 흡연의 죄에 대한 벌칙 상향(안 제153조의2)	18
6.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66조)	22

□ 최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221935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혁진의원·복기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6. 19.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마약류를 섭취하거나 기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항공기 기장이 기내에서 흡연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항공사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내부 징계에 그치고, 국토교

통부는 언론보도와 국회의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59조 등).

Ⅲ. 검토의견

1. 흡연의 형태 구체화(안 제57조의2)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업무 종사 시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흡연 형태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 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u>흡연</u>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 ----- ----- ----- ----- <u>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흡연을</u> ----- --.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57조의2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57조의2 중 “흡연”을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흡연”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흡연의 형태를 구체화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신종 담배 제품 등 흡연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 개정 취지에 공감함.

2.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 추가(안 제59조)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항공안전 <u>의무보고</u>) ① (생략) <u><신설></u>	제59조(항공안전 <u>의무보고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제57조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 ----- ----- -----.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⑤ 제1항 및 제2항----- ----- ----- -----.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4항----- ----- -----

현행	개정안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업무 또는 객실 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¹⁾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기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하였음.²⁾

이에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1)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단독)조종사 흡연 ‘늦장’, 갑질 제보는 ‘곧장’...에어프레미아 징계 ‘이중 잣대’, 2026.2.3.,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0062>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행위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재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보고내용>

항공기 준사고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다. 유도로(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5.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초기 상승 : 별표6 참조
7.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항공기 준사고	
경우(Pilot Incapacitation)	
8.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배분 이상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연료의 불충분, 소진, 누유 등으로 인한 결핍 또는 사용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	
1) 항공기가 지상 운항 중 다른 항공기, 장애물, 차량, 장비와 접촉·충돌	
2) 항공기가 지상 운항 중 관제지시와 다르게 운항하였거나, 부적절한 관제지시로 다른 항공기,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	
3) 항공기가 지상 운항 중 동물 등과 접촉·충돌(단, 국내 공항에 한한다)	
4) 항공기가 국내 공항 외 지역에서 지상 운항 중 동물 등과 접촉·충돌	
나.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1) 공항구역에서 조류와 충돌. 단,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의 공항구역(착륙200ft, 이륙500ft)에 한한다.	
2) 그 외 비행 중 조류와 충돌	
3) 비행 중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항공기 이륙·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착륙바퀴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多衆)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6. 운항 중 비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또는 비상조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한 경우	

※ 자료: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국토교통부 훈령 재구성

항공안전장애	
1. 비행중	
가. 항공기간 분리최저치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분리최저치가 확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던 경우.	
1)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ACAS RA)이 발생한 경우	
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기 감시 장비에 근접충돌경고(short-term conflict alert)가 표시된 경우. 다만,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 간 분리최저치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관제지시를 하였고 조종사가 이에 따라 항행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수면·장애물 등과 최저 장애물회피고도(MOC, Minimum Obstacle Clearance)가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항공기 준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행경로 또는 비행고도 이탈 등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행을 한 경우. 다만, 허용된 오차범위 내의 운항 등 일시적인 경미한 고도·경로 이탈은 제외한다.	
2. 이륙·착륙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착륙을 한 경우	
1) 활주로 또는 착륙표면에 항공기 동체 꼬리, 날개 끝, 엔진덮개, 착륙장치 등의 비정상적 접촉	

항공안전장애	
2) 비행교범 등에서 정한 강하속도(vertical speed), “G” 값(착륙표면 접촉충격량) 등을 초과한 착륙(hard landing) 또는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한 착륙(heavy landing)	
3) 활주로·헬리패드 등에 착륙접지하였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착륙을 한 경우 가) 정해진 접지구역(touch-down zone)에 못 미치는 착륙(short landing) 나) 정해진 접지구역(touch-down zone)을 초과한 착륙(long landing)	
나.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륙활주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륙을 강행한 경우 1) 부적절한 기재·외장 설정 2) 항공기 시스템 기능장애 등 정비요인 3) 항공교통관제지시, 기상 등 그 밖의 사유	
다. 항공기가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착륙장치가 활주로표면 측면 외측의 포장된 완충구역(Runway Shoulder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이탈하였으나 활주로로 다시 복귀하여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마무리 한 경우	
3. 지상운항	
가.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 등과 접촉·충돌하였거나, 공항 내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접촉·충돌한 경우. 1)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다른 항공기, 장애물, 차량, 장비와 접촉·충돌 2)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다른 관제지시와 다르게 운항하였거나, 부적절한 관제지시로 다른 항공기,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 3)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동물 등과 접촉·충돌(단, 국내 공항에 한한다) 4) 항공기가 국내 공항 외 지역에서 지상운항 중 동물 등과 접촉·충돌 5)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공항 내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접촉·충돌한 경우	
나. 항공기가 주기(駐機)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 등과 접촉·충돌한 경우. 다만, 항공기의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항공기가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라.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	
마.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의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활주로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4. 운항 준비	
가. 지상조업 중 비정상 상황(급유 중 인위적으로 제거하여야 하는 다량의 기름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나. 위험물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라벨링, 포장, 취급 등이 발생한 경우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1)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2) 객실 조리기구·설비 또는 휴대전화기 등 탑승자의 물품에서 경미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 분사, 수증기 등의 요인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운항 중 항공기의 연료공급시스템(fuel system)과 연료덤프시스템(fuel drain system)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 누출이 발생한 경우	
다. 지상운항 중 또는 이륙·착륙을 위한 지상 활주 중 제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제동시스템 구성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라. 운항 중 의도하지 아니한 착륙장치의 내림이나 올림 또는 착륙장치의 문 열림과 닫힘이 발생한 경우	
마.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고시한 항공기기술기준에 따른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한 항공기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한 경우	

항공안전장애	
바. 대수리가 요구되는 항공기 구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결항, 3시간 이상의 지연 또는 회항 등이 발생한 경우	
아.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자.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1) 발동기의 연소 정지	
2)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3)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차. 운항 중 발동기 배기시스템 고장으로 발동기, 인접한 구조물 또는 구성품이 파손된 경우	
카.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항공기에서 발동기를 조기(非계획적)에 떼어 낸 경우	
타. 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시스템 또는 항공기의 과속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하. 비상탈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품 또는 탈출용 장비가 고장, 결함, 기능장애 또는 비정상적으로 전개한 경우(훈련, 시험, 정비 또는 시험 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 한 경우	
6. 공항 및 항행 서비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또는 위험물이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 이동지역에 방치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교통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1)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되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로 하는 관제교신을 하지 못한 상황	
2)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중단된 상황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항공이동통신시설·항공정보방송시설 등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예비장비가 작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항공이동통신시설·항공정보방송시설 등 항공정보통신시설과 항공기 간 신호의 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상황	
3) 1) 및 2) 외의 예비장비(전원시설을 포함한다) 장애가 24시간 이상 발생한 상황	
바. 활주로 또는 유도로 등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과 차량, 장비 또는 사람이 충돌하거나 장비와 사람이 충돌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기타	
가. 운항 중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충돌·접촉, 또는 충돌우려 등이 발생한 경우.	
1)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 다만, 항공기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조류와 충돌	
나) 우박, 그 밖의 물체.	
2) 드론, 무인비행장치 등	
나. 운항 중 여압조절 실패, 비상장비의 탑재 누락, 비정상적 문·창문 열림 등 객실의 안전이 우려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 제1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승무시간 등의 기준 내에서 해당 운항승무원의 최대승무시간이 연장된 경우	
라. 비행 중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레이저 광선에 노출된 경우	

항공안전장애
마. 항공기의 급격한 고도 또는 자세 변경 등(난기류 등 기상요인으로 인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해 객실승무원이 부상을 당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바. 항공기 운항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또는 심리상태 등의 사유로 해당 객실승무원의 교체 또는 하기(下機)를 위하여 출발지 공항으로 회항하거나 목적지 공항이 아닌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 자료: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재구성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로 인한 의무 보고는 각종 안전사고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 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② 항공종사자 등의 책임을 감경하는 목적으로 보이는 반면,³⁾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가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입법화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섭취 및 사용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항공안전 의무보고 관련 조항이 아닌 각 해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에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항공안전법」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근거 마련에는 동의하나, 항공안전 의무보고는 안전 발생 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을 수집·분석하여 안전개선에 활용할 목적이므로, 항공조종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섭취 또는 항공기 내 흡연에 대한 보고는 해당 금지조항 내에 포함되도록 수정이 필요함.

2) 한국항공협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한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 등이 없어 개정안에서 신설한 보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

또한, 현행 국내법 상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은 항공기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로 구분되는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 내 흡연행위 자체는 항공안전장애가 아닌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험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사실조사 대상 추가(안 제60조)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실조사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u>항공기준사고</u> 또는 의무보고 대상 <u>항공안전장애</u> 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0조(사실조사) ① -----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및 제2항----- -----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받은 경우나 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이러한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법 위반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개정안은 기존의 사실조사 대상 외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사실조사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안 제59조제2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섭취 등 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될 경우 그 후속조치로서 보고된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그러한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의 주류등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근거 마련에는 동의하나, 항공안전 의무보고는 안전 발생 사건에 대한 위해요인을 수집·분석하여 안전개선에 활용할 목적이므로, 항공조종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섭취 또는 항공기 내 흡연에 대한 보고는 해당 금지조항 내 포함되도록 수정이 필요함.

4. 기장의 보고 대상 추가(안 제62조)

개정안은 기장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 ④ (생략)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장은 항공기사고, <u>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u>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 <u>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u> ----- ----- -----.
⑥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u>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u> 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u>항공기준사고,-----</u> ---- <u>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u> ----- -----.
⑦ 항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u>제59조제1항 및 제2항</u> ----- -----.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기장으로 하여금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나 ②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기장의 보고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기장의 보고 대상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이는 각종 안전사고나 긴급상황 등에 대한 기장의 보고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인 반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기장의 보고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및 방지가 그 목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현행법 제62조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바, 개인의 금지행위 및 규율위반 성격의 흡연 및 주류 섭취를 운항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에 포함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목적과 상충됨.

또한, 국제기준(ICAO 부속서 6)에서의 기장의 보고 의무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항공기 내 흡연의 죄에 대한 벌칙 상향(안 제153조의2)

개정안은 운항 중이거나 주기⁴⁾ 중인 항공기 내에서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이 흡연을 하였을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 2를 위반한 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 ----- <u>3년 이하의 징</u> <u>역 또는 3천만원</u> ---.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 의2를 위반한 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u>2년 이하의 징역</u> <u>또는 2천만원</u> -----.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운항 중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이 흡연을 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의 이러한 처벌 수준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항공기 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을 방지하려

4) 항공기를 정지시켜 두는 행위 또는 그 장소

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형벌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형벌의 체계 및 해당 범죄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처벌 수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운송수단 입법례인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업무 종사 중 주류등 섭취에 대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음주행위가 운송수단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항공, 도로, 철도, 해상 관련 입법례와의 비교>

구 분		법정형(최대)	
항공	음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	음주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 (운전, 관제 종사자)	음주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의 벌금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0.02~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상	음주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의 벌금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도로교통법」 및 「해양교통안전법」은 흡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의 흡연 및 여객열차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⁵⁾

이는 흡연행위가 음주행위에 비해 운송수단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흡연행위로 인한 처벌수준이 음주행위로 인한 처벌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개정안이 규정하려는 처벌 수준은 다른 입법례의 처벌 수준과 비교하여 다소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⁶⁾

5) 「철도안전법」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흡연하는 행위

제8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 6)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그 법치국가의 개념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뿐만 아니라 법정형벌은 행위의 무거움과 행위자의 부책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적 고려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90헌바24, 1992.4.28.)

나. 국토교통부 의견

기내 흡연 근절과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단순 흡연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형벌 비례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과도할 우려가 크다고 보임.

따라서, 징역형 도입보다는 행위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벌금 상향 폭을 조정하거나 행정처분 등과 연계하는 등 적정 형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6.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66조)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6조(과태료) ① ~ ④ (생략)	제166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u>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2. 제59조제1항 및 제2항----- ----- <u>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166조제5항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구분	내 용
1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호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호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4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5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에 대한 보고가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에 따라 개정안의 수정 및 입법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에 대한 보고를 해당 금지 조항에 포함하도록 검토한 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에 대한 각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한국항공협회

내부 고발 시스템의 법제화 측면에서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방을 중시하는 신뢰 기반의 공정문화 정립이 아닌, 향후 입증 책임의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까지 이어져 실제 항공 안전 문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 내 기내 흡연과 주류등 섭취 금지에 대한 자율 및 의무보고 체계의 고도화 및 실제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580